

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수정 공고(8월)

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. 8. 1.

충청남도지사

1.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·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,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

○ 사업기간 : 2022. 10. 4. ~ 2023. 10.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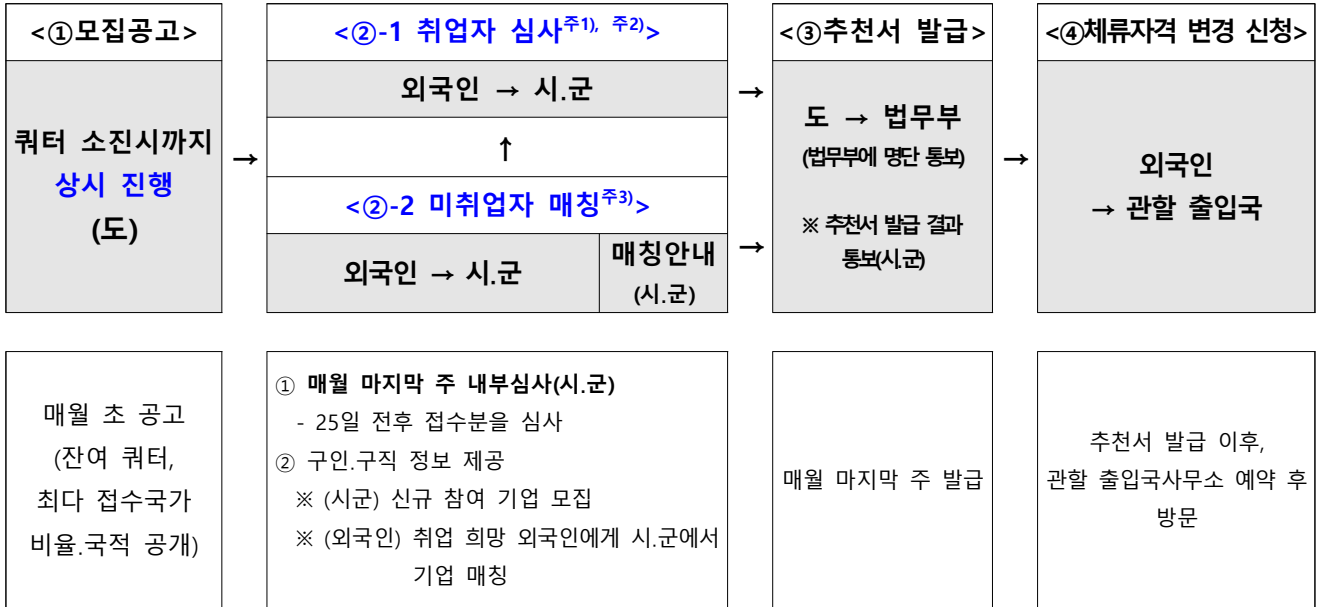
○ 사업지역 : 2개 시·군(보령, 예산)

○ 사업내용

- (유형 1. 지역우수인재)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장이 추천*하는 외국인에게 거주(F-2)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*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(F-2)비자 신청 가능
- (유형 2. 동포가족)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(배우자, 자녀)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

2. 사업일정

○ (추진흐름) (취업자 : ①→②-1→③→④) / 미취업자 : ①→②-2→②-1→③→④)



주1)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진
(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)

주2) 과다 신청시, 기취업자, 거주기간, TOPIK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자 선정

주3)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,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

3. 모집안내

○ 모집인원 : 지역우수인재 14명

<시.군별 지역우수인재 쿼터(안)>

구분		배정인원	추천서 발급인원	모집인원	비고
계		150	136	14	
모집현황 (7월말 기준)	보령	75	65 (베트남 38)	10 (베트남 모집종료)	유형 1
	예산	75	71 (네팔 26)	4	유형 1 유형 2

○ 신청기간 : 2022. 10. 4. ~ 2023. 10. 3. (상시 모집)

- 신청기간 중 배정인원 완료 시 모집 종료

- 매월 마지막 주, 시.군 접수분을 취합하여 자체심사 후 추천서 발급

○ 신청자격

□ 대상

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,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

【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】

-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,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
-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
-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(F-2-R, F-1-R)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

□ 자격 요건

가. 학력/소득(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)

1) 학력

- 대전·세종·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*
*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 (대학 총장,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)
-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

2) 소득

- 소득 주체: 신청인(본인) 소득만 인정
- 소득 금액 기준: 신청일 기준 전년도*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70% 이상
* 2022년 1인당 GNI 4,248만 7천원 (70% - 29,740,900원)
-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: 신청일 기준 전년도*의 연간소득
- 인정되는 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
 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 -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
 - 「소득세법」 제12조(비과세소득)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

나. 거주지

-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(기초자치단체)에 실거주
-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약속
 -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(기초자치단체)에 실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

다. 취업

- 신청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준 제조업(10~34)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*

*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

-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
 -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(기초자치단체)일 것
-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약속
 -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(기초자치단체)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
 -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
 - '계속해서 취업'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/4(1년 기준 9개월)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

마. 품행단정

- 국내·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(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)

바. 기본소양 (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)

-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

□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

가. 체류자격 : F-2-R(지역우수인재)

나. 체류기간 : 최대 1년

- 취업기간: 5년(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,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)
- 지원혜택: 실거주,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(F-2-R)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
-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(배우자, 미성년 자녀, 국내출생자녀(F-1-R) 비자발급 가능
※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

< 주의 사항 >

- ▶ 추천 대상자의 특정 국적 비율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을 수 없음
- ▶ 쿼터 소진 시까지 시·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에서 선착순* 접수

* 신청 인원 초과 시 ①기(既)취업자 ②거주기간 ③TOPIK 성적순 우선 선발

○ 제출서류

<시.군 제출 서류>

□ 외국인

- 취업자(②-1) : ①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, 신분증(여권, 외국인등록증)

<학력 요건>

② 대전·세종·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:
학력증명서, 학위증,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 / (택 1)
※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가시 추가 제출 필요

<소득 요건>

③ 소득 입증서류 :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

<거주 요건>

④ 거주지 입증서류 :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
외국인등록사실증명*, 기숙사(숙소) 제공확인서 등 / (택 1)
*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없이 기숙사에
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한하여 인정

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: 근로(고용)계약서*, 재직증명서,
사업자등록증 등 / (택 1)
*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

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(3단계 이상) 또는
한국어능력시험 (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)

⑦ 대전·세종·충남 지역대학 학교장 추천서

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

- 미취업자(②-2) : 추천서 미발급(취업 후 추천서 신청절차 진행)

※ 미취업자의 경우, 시·군을 통한 일자리 연계가 반드시
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 구직, 구인활동 노력 필요

<법무부 제출 서류>

□ 외국인(도→법무부 추천서 발급 이후)

① 시.군 제출 서류 일체*

* 시·군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원본 반환(사본 보유)

② (생략)지자체 추천서(도→법무부 공문으로 직접 제출)

③ 확약서(필요시)

4. 접수방법
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※ 본인 신청 원칙
- 신청 유의사항 :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
- 신청관련 문의처 :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(041-635-4987) /
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(041-930-2321) /
예산군 경제과(041-339-7282)

5. 기타사항

- 우리 도 허용업종 확인 필수
- 도→법무부 추천서 발급 이후, 시·군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예정
‘거주(F-2)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’을 위해
하이코리아(<https://www.hikorea.go.kr/>)에서 예약 후 관할 출입국·외국인
사무소 방문
-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
에서 체류자격이 반려될 수 있음
-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 불가

붙임 1

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

연번	사업참여 지자체	사업대상지역	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	지역특화형 동포가족	시행일	관할 출입국
1	충남	보령시	○	X	'22. 10. 4	대전
2		예산군	○	○	'22. 10. 4	천안

붙임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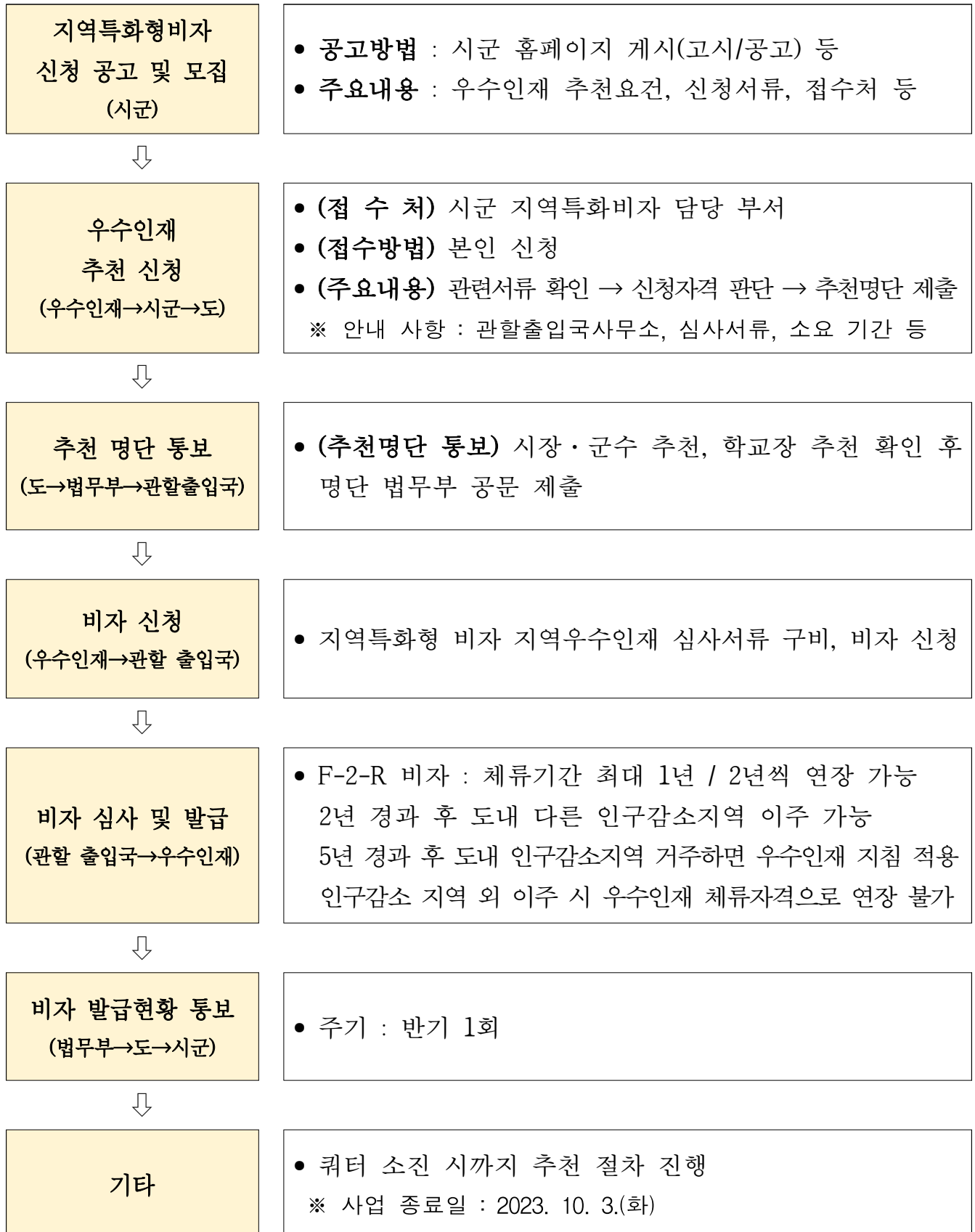
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(F-2-R) 취업 허용 업종

지자체		취업/창업 허용 업종
충남	보령시 예산군	<p>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 제조업(11), 담배 제조업(12), 섬유제품 제조업: 의복제외(13),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;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(16)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19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, 가구제조업(32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</p>

붙임 3

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추진 체계

□ 추진체계



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(F-2-R, F-1-R)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·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,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【 허가조건 】

1. 지역우수인재(F-2-R) 체류자격 소지자

-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
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
-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·창업할 것
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 (근무처 변경 가능)
 -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

2.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(F-1-R) 체류자격 소지자

-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
 -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
 - 다만,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
- 주체류자격(F-2-R)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

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(우수인재)

(1쪽)

※ (*)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.

개인정보	성명(*)		주민등록번호(*) 및 여권번호	
	① 주소(*) (우편번호 :) (현거주지)			
	② 연락처	전화번호(*) (택1가능)	전화	휴대전화
전자우편		무료 문자서비스 []받음 []받지 않음	이메일수신 서비스 []받음 []받지 않음	
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	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[] ② 국 적[]			
최종 학력사항(*)	학교명	전공(부전공)	재학기간	상태
			년 월 ~ 년 월	[]졸업(예정) []재학 []수료 []휴학 []중퇴 []검정고시 []독학사
③ 주요 경력사항	근무처	직위	담당 업무	근무기간(연, 월)
	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이력사항	보유자격			(년 월 취득)
				(년 월 취득)
				(년 월 취득)
				(년 월 취득)
	컴퓨터 활용능력	[]문서 작성 []스프레드시트 []프리젠테이션 []회계프로그램 []기타()		
한국어 능력	한국어 능력	수준	공인시험 명칭	등급·점수
		[]상 []중 []하		급(점)
		[]상 []중 []하		급(점)
그 밖의 특이사항				

210mm×297mm[보존용지(2종)70g/㎡]

지역우수인재 학교장 추천서

추천 학교	기본 사항	학교명(분교)		
		학교주소		
	담당자	성명	직장전화번호	
추천 대상	인적 사항	성명		국적
		생년월일		외국인등록번호
		주소		
		전화번호		
		전자우편주소		
	전공	학과명	(전공계열:)	
		졸업 여부	[] 졸업자	[] 졸업예정자
		졸업(예정)시기	년	월
	TOPIK 등급	시험종류		
		시험일자	시험점수/등급	
사회통합 프로그램	인증단계			
	이수일자			

위 사람을 충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학교명 (직인)

○○시장 · 군수 귀하

첨부서류	1. 졸업증명서 (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·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) 2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중 택1
-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1. 공통

- 비자신청서, 여권, 사진

2. 해당자

- 외국인등록증

- 학력 입증서류: 학력증명서, 학위증,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(택 1)

※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

단,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연장허가 시 제출 필요

- 거주지 입증서류: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*, 기숙사(숙소) 제공확인서** 등 (택 1)

*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
**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(확인서 하단 제출서류 함께 첨부)하며,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

- 경제활동 입증서류

- (취업자) 고용계약서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

- 해외범죄경력증명서

- 기본소양 입증서류

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(3단계 이수)
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(3급 이상)

- 가족관계 입증서류 (법무부 확인가능)

- 확약서

- 지자체 추천서(도 -> 법무부 공문으로 발송)

- 학교장 추천서

1. 제출 대상자

-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
 -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
- 단,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
 -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
 -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·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
 -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

2. 요건

-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,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
 -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
 - 주한 러시아대사관,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

3. 유효기간

-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
4. 기타

-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,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
-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* 제출

*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

